



#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실적보고

## I. 사업실적

### 1. 업무현황

#### 가. 일반현황

구분	'15.12.31	동기 대비			
		'15.9.30	'16.9.30	변동	증감률
조합원수	개사 6,808	6,789	7,009	220	3.2%
출자좌수	좌 640,683	638,988	669,568	30,580	4.8%
자본금	억원 6,359	6,302	6,625	323	5.1%

#### 나. 영업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분	실적				잔액 (16.9.30 현재)
	2015년		'16.11 ~ 9.30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보증	92,032	2,284,182 (1,900억원/월)	65,610	1,801,433 (2,000억원/월)	4,242,272
융자	2,781	120,750	2,013	84,836	107,018
공제	13,403	4,142	9,993	3,012	-

#### 다. 보증금 청구 및 지급현황

(단위 : 억원, 16.9.30현재)

구분	청구	해소 (감액·면제)	지급	계류 중
계	5,582	3,542	1,532(27.4%)	508
1996~2015년	5,415	3,385	1,472	508
2016년 9월	167	157	60	

#### 라. 관리채권 회수현황

(단위 : 억원, 16.9.30현재)

구분	총 발생액	회수	상각처리	구상협의 등	계류 중	
계	1,577	746	611	59	161	
보증 지급금	소계	1,532	710 (46.3%)	602	59	161
	96~15	1,472	694	602	59	161
	2016.9	60	16			
관리융자금	45	36	9			

## II. 중점 추진사업

### 1. 조합 경영개선 방안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조합의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재무제표상 적자는 아니나, 예금이자 하락으로 영업외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, 직원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환경이 열악해져 수익증대 방안 모색은 물론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시급함
-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 및 조합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시점임

#### 나. 조합 경영합리화

- 이에 따라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보증 센터를 설치하고, 11개 사무소를 폐지한 후 보증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등 시스템 정비 및 인력 재배치(2016. 7. 1)  
- [자금운용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팀 신설 운영 중(2015. 10. 13)]
-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신사업팀 신설(2016. 7. 1)
- 성과연봉제[차등인상률] 도입 및 호봉제 폐지(2017. 1. 1)
- 정년 연장(58세 → 60세)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(2017. 1. 1)  
- 4년 기준 : 75% → 65% → 55% → 45%



## 2. 보증제도 개선

### 가. 현황 및 배경

- 손해율이 낮은 보증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
    - 보증한도 추가 부여
  - 공사이행보증, 하자보수보증(일반건축물), 입찰보증에 대하여 자산등급별(자산 200억원 이상) 보증위험도를 차등 적용하여 실질한도 확대
    - 공사이행보증 보증수수료 할인 : 최대 80% 할인
      - 공동수급체 형성 : 20%
      - 낙찰율 77.5%이상 : 20%
      - 담보좌수 3,000좌 이상 20%
      - 자산 200억원 이상 15%
- ※ 위에 합산된 할인율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서 시공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20% 할인

### 나. 조합 기대 이익

- 연간 약 10억원의 수익증가 예상(공사이행보증 50%, 하자보수보증 56% 시장점유율 달성 기준)
- ※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2016.10.1 시행 중이며, 조합수익구조개선 TF 직원 2인이 대형업체 및 종합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현장 영업활동 중임.

## 3. 공제사업 개선 추진(보유공제 전환)

### 가. 추진배경

- 공제로 인하를 통한 조합원에게 혜택 제공
- 조합의 수익사업 창출을 통한 안정적 재무구조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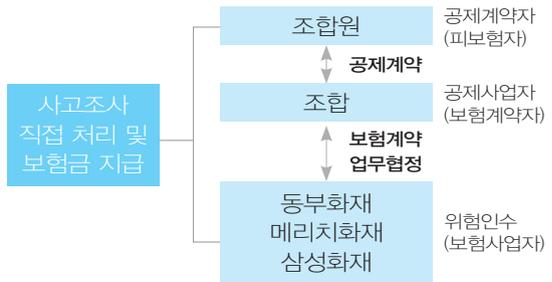
### 나. 관련 근거

-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(공제조합의 사업)

-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-610호, 2015.08.20)
- 조합 정관 제47조제1항제4호(손해공제사업)

### 다. 현재 공제업무[판매공제 방식]

- 조합 : 판매공제(공제상품 안내, 공제증권 발급)
- 보험회사 : 공제사고 업무(사고조사, 손해사정, 공제금 지급, 소송 등)



### 라. 향후 추진계획(보유공제 방식)

- 조합에서 근로자재해 공제상품 안내, 공제증권을 발급하는 판매공제(보험사 상품 위탁판매)방식으로 업무수행 하였으나,
-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수행하던 사고조사, 손해사정, 공제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이 업무 전체를 직접 수행하는 보유공제 방식으로 전환 추진
  - ※ 보유공제 : 조합이 상품기획 및 판매, 영업, 손해사정, 보험금지급 등 업무 전체를 직접 수행

### 마. 추진 일정

- 2016. 10~12월 기초서류 작성, 사전 제출 및 설명
- 2016. 12월말 인가신청(공문)
  -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의거 공제사업 시 표준사업방법서, 표준 약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신청
- 2017. 2~3월초 인가획득(예정) 📍